

디지털 경제의 역차별 이슈: 구글세 이후의 세상

하인츠 (Kocca)
한민

목 차

1. 구글세 개요
 2. 구글세 논의 배경
 3. 논의 진척
 4. 국내 구글세 논의
 5. 요약 및 결론
-

1. 구글세 개요

1. 개념:

- 유럽 각국에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구글로 대표되는 인터넷 기업, IT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저작권 침해 소송, 조세 회피 행위 등에 대해 벌금 혹은 체납세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구글세>로 통칭

2. 종류

- 반-독점 소송(Anti-trust litigation)에서 불공정 거래 판결에 따른 벌금 (fine) 으로서의 구글세
- 콘텐츠 사용료 혹은 저작권료에 대해 세금형태 징수 목적의 구글세
- 조세회피에 따른 구글세: 주로 법인세 관점에서의 구글세와 부가세 관점에서의 구글세

3. 유럽의 구글세 관련 기타 쟁점

- Data storage : data governance
 - privacy laws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등
 - National security : 중국, 러시아 등
-

2. 구글세 논의 배경: 국외

1) 독과점 문제 (Anti-trust litigation): 인터넷 환경

- 유럽각국에서 2000년대 초,중반, 구글, 야후 등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독과점 문제 지속적 제기.
 - 구글 검색서비스를 우선하거나 검색순위 조작 등 검색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불공정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해 EU와 자국 법원에 제소하는 사태가 빈발
 - * Foundem(영국의 가격비교 사이트), Ciao(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 eJustice(프랑스 법률정보 검색사이트) 등 3개 업체, 그리고 그 후에도 Expedia(여행전문 사이트), Streetmap(영국 온라인 지도 사업자) 등
 - * 온라인검색에서 장악력이 높은 구글이 자사의 쇼핑, 여행, 지역 검색서비스 등에 포함된 제품 정보를 우선 표시
 - EU의 구글에 대한 불공정 혐의 조사 진행(2010. 7.부터 3년간). EU 경쟁당국은 구글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 이에 구글은 개선안 제시하여 합의 종결(2013. 4.)했으나 그후에도 유럽 각국의 반발은 계속
-

2. 구글세 논의 배경-국외

1) 독과점 문제 (Anti-trust litigation): 모바일 환경

-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글의 독과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 벤더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는 구글의 서비스 이용규정이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해 2013년부터 Microsoft, FairSearch 등 17개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
(* 구글 자사 앱 의무적 선 탑재 문제: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를 개방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단말 벤더에게 검색, 지도, YouTube, Play Store 등의 서비스를 기본 탑재 하도록 강요하고 유사한 타 서비스는 불허함)
 - 유럽위원회(EC) 2013년부터 구글의 모바일 관련 독점금지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 이후 포르투갈 앱마켓 사업자인 앵토이드(Aptoide)도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EU에 제소(2014. 6)하는 등 EU 내 구글의 시장 독점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 확대되고 있음.
(* 앵토이드 앱은 다운로드 어려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
 - 현재 구글 Android 모바일 운영체제(OS), 광고 서비스 AdSense에 대해서도 반독점 혐의 조사 진행중
-

2. 구글세 논의 배경-국외

2) 저작권 문제

- 2000년대 중, 후반 유럽 신문사 중심으로 구글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소송 빈발

(1) 벨기에:

- (2006) 벨기에 언론협회(Copiepresse)는 구글의 뉴스검색 서비스를 콘텐츠를 아무런 대가없이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 (2007) 벨기에 법원이 언론사의 사전 허락없이 Google News를 통해 기사를 노출시킬 수 없다며 Google에 패소 판결을 내림)
- (2012. 12.) 구글, 사진작가협회, 작가협회와 화해, '종이매체의 디지털 진화 지원' 약속

(2) 프랑스:

- (2005)뉴스매체(AFP), 언론협회(IPG) 등이 자사 신문기사의 무단사용에 대해 구글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2012. 10.)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콘텐츠 이용료 및 사이트 접속료 지불 계약에 대한 해결책 요구
- (2013. 2. 1.) 구글은 프랑스에서 구글세 신설을 막기 위해 '종이매체의 디지털 매체로의 진화 지원'을 위한 6,000만 유로(8,2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출판혁신 펀드'(Digital Publishing Innovation Fund) 조성에 공식합의(* 프랑스 정부는 기금 소진 시 구글과 재협의 할것 밝힘)

2. 구글세 논의 배경-국외

(3) 독일:

- (2012) 구글의 신문기사 저작권료 문제로 저작권법 개정 법안 발의
- (2013. 3.)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업자가 '일정 정도 길이 이상'의 뉴스의 '발췌'(news extracts)를 노출시킬 경우 그에 대한 로열티를 저작권자에게 내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보조저작권(ancillary copyright)'개념 도입
- 하지만 '일정 정도 길이 이상'의 뉴스의 '발췌'(news extracts)의 기준 불명확, 유, 무료 저작권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해 실효성 떨어짐.
- 신문기사의 구글 등록을 자발적 선택으로 바꾼 결과 전부 다시 등록

(4) 스페인:

- (2013)스페인 최대 신문협회인 AEDE는 구글의 보상 없는 뉴스의 무단 사용과 이 문제에 대한 대정부 로비에 불만을 제기함
 - (2014. 10. 30.) 스페인 정부는 뉴스 콘텐츠 발췌(news extracts)의 범위와 길이 등의 불명확한 문제로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패한 독일의 경험을 거울삼아 새로운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은 만약 저작권료 지불없이 뉴스를 '발췌'하거나 '링크'를 걸 경우 30만 유로에서 6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음
-

2. 구글세 논의 배경-국외

- 스페인은 아예 뉴스 콘텐츠 발췌(news extracts)도 저작권과는 ‘떨어질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 ‘derecho irrenunciable’)라는 개념을 법안에 넣고, 이를 이용한 제3자에게 추가부담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2014년 7월 22일 하원, 2014년 10월 17일 상원 승인을 거쳐 10월 3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음.
 - 스페인의 경우 수익 악화로 고전 중인 스페인 신문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법안 통과 후 신문업계가 8000만 유로(약 1080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측
-

2. 구글세 논의 배경-국외

3) 조세회피 문제(tax avoidance) :

-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의 고갈 속에서 세계 각국들이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던 중 인터넷, 디지털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를 문제 삼기 시작했음
- (영국) 정부는 구글의 매출액 32억 파운드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매출액의 0.19%)에 불과하다며 조세 회피 문제를 지적(*현재 영국 법인세율은 20%)
- 프랑스, 독일, 호주도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법인세율이 적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으로 세원을 이전하는 수법인 'Double Irish Dutch Sandwich' 전략으로 조세 회피를 한다고 비난하며 대책마련

-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논의 방향

- ① 직접세 관점: 구글, 애플 등의 다국적 IT기업들이 세계 각국 법인들의 수익에 대한 세금(법인세)을 세율이 높은 나라 법인들에서 세율이 낮은 나라에 설립한 법인으로 몰아 세금을 줄이는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조작을 통해 세금을 회피(tax planning)하는데 대해 이를 세금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글세'로 명명함.16)
 - ② 간접세 관점: 최근 들어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 앱 등의 역외 판매에 대해 소비지국을 중심으로 매출세(Sales Tax), 소비세(Consumption Tax), 부가세(Value Added Tax)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구글세'로 부르기도 함.
-

2. 구글세 논의 배경-국외

(1) 프랑스

- (2010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이 프랑스에서 수익을 내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점을 비난하면서 '온라인 광고세'(일명 '구글세') 도입을 추진함
 - '온라인 광고세'(구글세): 프랑스에 근거를 둔(France-based) 사업자의 온라인 상의 광고비용의 1%를 조세로 부과(부가가치세 개념)
 - '온라인 광고세'의 세수는 5,000만 유로로 예상되었으며 이중 4,500만 유로가 구글에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문제점): '온라인 광고세'는 다국적 광고회사(구글 등)의 경우 조세회피가 가능하여, 실제 세부담은 자국의 중소형 광고회사, 이-커머스사업자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견.
 - 실제 구글의 경우 프랑스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구매 장소를 외국(특히 아일랜드 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피했음.
 - (2010. 11. 15.)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예산 장관은 구글세가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2011년 1월이 아닌 7월 1일로 미룰 것이라고 밝힘
 - (2010. 12. 29.) '온라인 광고세'의 신설이 포함된 2011년 재정법(2011 Finance Act)이 프랑스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를 통과함
 - (2011. 6. 22.) 프랑스의 '온라인 광고세'도입 계획 철회
 - (2012. 6.) 구글세 2.0: 국내, 외의 온라인광고사업자에게 광고 판매의 0.5-1% 과세, 실패
-

2. 구글세 논의 배경-국외

(2) 호주

- (2011) 커뮤니케이션부 장관 Malcolm Turnbull은 구글이 호주시장에서 10억 달러~1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는 78만1,461달러 밖에 내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공론화 함
 - 이에 대한 구글의 답변 거부로 호주 국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 착수
 - 이 문제로 호주는 소득세법(income tax) 속에 국경을 넘는 이전가격(cross-border transfer pricing) 관련 규정을 OECD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3년여에 걸쳐 실효성 있게 계속 개정함
 - 구글을 통해 광고하는 호주 기업의 광고는 Google Australia와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 호주 세법에 따른 세금부과
 - 구글호주의 법인세는 2012년 620만 달러, 2013년 707만 달러로 2011년에 비해 10배로 뛰었음.
 - 하지만 아직도 구글호주의 검색서비스 매출은 호주가 아닌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려짐.
-

2. 구글세 논의 배경-국외

(3) 일본

- 일본은 해외기업(구글, 애플 등)의 일본 소비자에 대한 콘텐츠 판매에 대해 소비세(Consumption tax) 부과 방침을 밝힘.(2015. 10부터. 적용)
 - 세금 부담의 차이가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평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일본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플랫폼 시장에서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을 세제면에서 동등하게 취급하여 대등한 경쟁조건이 조성되도록 정비.
 - 이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서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책, 음악에 대해 2015년부터 새롭게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세 부과 대상을 '국내거래'와 '물품 수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미국 등 해외기업의 콘텐츠 판매는 세관을 경유하지 않아 '국외 거래'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새로운 소비세 과세 기준은 현재의 '서비스 제공기업의 소재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변경되며, 해외의 세무 당국과 긴밀한 공조 추진 예정
-

3. 논의 진척

1) 반독점 소송(Anti-trust litigation): 3가지 쟁점

(1) 인터넷

- <검색서비스 문제>: 검색 엔진 지배력을 이용해 Google Shopping비교결과 우선 배치. 이 문제를 통해 여행, 지도, 로컬 검색 서비스의 문제 해결 가능.
- (2017. 6. 27) EU집행위원회(EC)가 구글에 24억2000만유로(28억 달러,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EU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 2009년 인텔 12억 달러 과징금의 두배).
- (2017. 8.30) 구글, EC의 결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담은 제안서 제출. 구글 경쟁 업체로 구성된 전자 상거래 로비 그룹인 ICOMP은 내용 공개 촉구

(2) 모바일

- EU는 구글의 모바일 운용체계(OS) Android, 광고 서비스 AdSense의 반독점 혐의도 조사 중.
 - <Android 문제>: OS 선택제한, 구글 앱 선택제 등에 대해 2016년 4월 구글에 이의제기서 보냄, 2016년 11월 답변, 2017년 연말이나 2018년 초 결론이 날 예정. 가장 복잡한 문제로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해야 할 수도.(2016. 903억 달러 매출의 85%가 검색 광고)
 - *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2004년 EU 집행위로부터 같은 혐의로 6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2007년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 러시아도 이 문제의 판결로 Yandex의 모바일 점유율이 올라감.
 - <광고서비스 문제>: 2016년 7월 3차 조사결과 구글의 광고서비스가 소비자 선택을 제한, 연말에 결론.
-

3. 논의 진척

2) 저작권 문제: ‘정보세’ 입안중(‘snippet tax’ proposal)

- “디지털 시대의 유럽저작권법” 개정 작업의 일환(2017. 7. 30)
 - 신문사의 뉴스(기사, 제목, 단문 인용 등) 등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를 구글, facebook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료(neighbouring rights: 복제, 배포, 대여, 전송권) 지급해야 함
 - 스페인의 저작권법에서 도입된 세금 제도를 토대로 만들
 - 독일(Axel Springer), 영국(Rupert Murdoch's Newscorp), 프랑스(AFP), 유럽(European Alliance of News Agencies) 등 지지
 - 구글과 facebook 등의 “Unauthorised internet use of media content”로 인한 신문산업의 수익저하는 고품질 신문기사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위협
 -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 council): 유럽 각국(28개 회원국)의 의견 수렴중
 - 유럽각국 이분됨, 승인 위해 전체 유럽인구의 65%의 찬성 필요. 프랑스, 스페인, 독일은 찬성, 아일랜드, 영국, 북유럽은 반대.
 - 유럽의회 3개 위원회는 세금제안서 승인, 법사위원회는 아직, 로비스트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 중. 10월 10일에 법안을 승인 할 것으로 예상. 2017년 12월 - 1월에 본회의에서 전체 저작권 개혁을 위한 최종 투표를 할 것임.
-

3. 논의 진척

3) 조세회피 문제

- (영국), 2015. 4월-'우회이익세' (diverted profits tax) 도입,(다국적 기업이 국외로 이전한 소득에 대한 세율 25%), 연 매출 1000만파운드(약 178억원) 이상 올린 다국적 인터넷 기업이 대상.
 - 영국 국세청은 2016년 1월 구글로부터 1억3000만파운드(1858억원)의 세금을 추징(* 구글의 2005년-2015년까지 10년간 체납한 추정 금액(back tax) 합산) , 국내적 비난 쇄도.
 - (호주) 영국과 유사한 조세법 개정안을 2017년 7월부터 시행.(현지 법인세 30%+10%)
 - (이탈리아) 국세청도 2017. 5월 구글과 10여년 동안 미납한 세금(back tax) 3억600만유로(약 3825억원)를 받기로 합의
 - (프랑스) 2016년 5월 프랑스 검찰이 구글 파리 지사를 압수수색.세무조사, 미셸 사팽 재무장관도 영국보다 많은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하게 압박.
 - 2017년 7월 파리행정법원이 프랑스 정부가 부과한 미납 세금 11억2000만유로(1조4700억원)를 구글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줌. (*PE (고정사업장) 문제)
 - (EU) EU 경쟁위원회는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2016년 8월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불법 세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론, 애플에 미납 세금 130억유로(17조3000억원)를 이자와 함께 지불하라고 명령.
 - 아일랜드 정부는 이런 결정이 주권 침해라며 반발. 애플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장을 접수
 - (스페인, 호주, 폴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일본, 중국 등) 2015년 BEPS 최종보고서 승인에 따라, 다국적 기업 및 외국법인의 스페인 자회사와 고정사업장 등에 대해 이전가격보고서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세법을 입법
-

4. 국내 구글세 논의

1) 불공정 경쟁 (역차별)

- (규제) 국내 기업은 개인 정보 이용이나 콘텐츠 활용 규제의 제약 많음, 해외글로벌기업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나 저작권 사안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주장(*구글코리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규제: 대표이사 형사고발 등 형사처벌 가능,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과태료 부과 등 행정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안 한 순수 외국사업자는 망법상의 폐쇄조치나 차단 등 가능 (* 국내적으로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불공정 경쟁) 세금 납부, 고용 창출, 법규 준수 등에 앞장서는 국내 기업은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돼 시장에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

인터넷 기업 역차별 사례

영역	국내 기준	토종 기업	외국 기업
앱마켓 결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카드번호 보유 금지	앱 구입 때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입력	첫 거래 시 인증 거치면 추가 입력 절차 없음
불법 음란물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음란물 유통 방지 의무화 법 추진	대다수 토종 인터넷기업 부가통신사업자 포함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플레이등 부가통신사업자 아님
법 집행력 차이	불법 콘텐츠 심의·시정 요구	문제 발생 시 즉각 집행	권고할뿐 법 집행 사례 극소수
개인 정보	강력한 감시·감독	국내 법 준수	해당 국가 법, 내부 규정 우선
검색 결과·광고 구분	음영 처리 요구	PC 음영 처리 완료, 모바일 적용 중	규제 열외, 회사 정책에 따라 설계

-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조사 중,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국내 규제법의 시정 필요

4. 국내 구글세 논의

2)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 국내에서는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음.
 - 구글에 대한 국내 신문, 출판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검색 및 유통 사업에 대한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제기되지 않음(* 인터넷 검색 점유율 낮은 점(37%, 2016), 하지만 모바일 점유율 높고 상승 중)
 - 국내사업자인 네이버의 경우는 국내 50여개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 구글, 미지불)
 - 네이버 측 “우리는 신문사 등 언론사들과 정식으로 계약하고 해당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넘겨 받아 독자들에게 노출 시키고 있다. 뉴스 스탠드는 해당 언론사에 편집권까지 제공하고 뉴스 흐름에 노출되는 50여개 언론사에는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cf. 조선비즈, “구글세 받는 스페인 언론 “뉴스는 공짜 아니다””, 2014. 11. 05.
 - 프랑스나 벨기에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구글 검색서비스의 콘텐츠 사용료 문제는 제기되어야 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함.
-

4. 국내 구글세 논의

3) 조세회피 문제

- (법인세) 구글은 국내에서 광고 매출 관련 세금 내고 있고 탈세는 없다는 입장. 법인세 관점 구글 코리아는 유한회사로서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어 국내 매출규모, 세금규모 등은 비공개
 - (2014. 12.) 홍지민 의원(새누리당) 다국적인터넷기업의 세금 징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심사 단계에 머물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됨
 - (2016) BEPS 최종보고서 승인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발의, 매년 실시하는 ‘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구글, 애플코리아가 속한 부가통신사업자들도 포함.(시장 경쟁상황(점유율, 매출액) 평가자료 의무제출)
 -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김해영 의원(2016. 7.)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포함. 쟁점은 외감 후 자료의 공시의무 필요. 재무제표 공개, 과세자료로 활용.
 - 법인세법 개정안: 김해영 더민주 의원 대표 발의 예정(2017.말 ?)
(*해외 ICT기업들이 PE를 국외에 두고 있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광고를 노출시켜 수익을 내면 국내에 ‘디지털 상거래상’ PE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세한다는 내용) (*PE 판정기준(OECD, BEPS): physical presence(physical location) -> business presence (employee activity->significant economic presence(매출이 있는곳)로 변화)
(cf.소득원천지국에서의 실현한 수익기반 요소, 디지털 기반 요소(local domain name, local digital platform, local payment options), 사용자기반 요소-혹은 이것의 혼합된 연결점(nexus)
-

4. 국내 구글세 논의

- (부가세): 기재부의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 부가세 징수
- 부가세 문제는 유럽연합, 일본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국’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중(*MOSS 제도:간편온라인사업자등록 후 앱마켓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
- 지난 2010년부터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 증가 및 앱 마켓 사업의 급성장에 따라 국내 앱 마켓인 T 스토어와 네 이버앱스토어 사업자와 앱 개발사들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왔음.
- 그리고 해외 앱 마켓(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 국내개발자가 앱을 판매한 경우 국내 개발자가 부가가치 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 하지만 해외 앱 마켓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앱 콘텐츠 구매 시 해외 개발자나 해외 앱 마켓은 국내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 발생.(일본의 경우와 유사)
- 이에 구글, 애플 등의 해외 앱 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앱, 음원, 영화파일 등)에 대해 해외 앱 마켓 사업자에게 2015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VAT) 과세
- 부가세법(해외 플랫폼 사업: 국내 앱개발자-직접 부가세 신고 납부, 해외개발자-플랫폼사업자 신고 납부)
- 유럽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 장소는 소비자의 소재지로 보며, 앱 마켓이 사업자 등록지국에 각국 전체 앱 소비분 부가세 납부, 등록지국은 소비지국에 부가세 배분하는 방식 채택

5. 요약 및 결론

1) 구글세 논의 요약:

(1) 반-독점 소송(Anti-trust litigation)

- 3가지 쟁점: 검색(쇼핑, 여행, 지역정보 등), OS(안드로이드), 광고(AdSense) 진행중.
- * OS, 광고 문제: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2) 콘텐츠 사용료 혹은 저작권료 징수

- 구글은 조세나 정기적인 징수 형태 회피, 국내의 논의 시작 필요.
- 저작권 콘텐츠(기사, 사진 등) 사용 관련 저작권법 개정 노력 필요

(3) 조세회피에 따른 구글세: 주로 법인세 관점에서의 구글세와 부가세 관점에서의 구글세

- 접근 방법: 각국별 입법을 통한 방법과 국제적 공조를 통한 방법(* OECD의 BEPS 프로젝트)
 - 국제적 공조는 시간이 많이 소요, 각국마다 상황이 다름, 단기적으로 자국에 맞는 국내 입법을 통한 방법 유효
 - 자국 내 입법의 경우는 국제적 마찰이 생길 가능성 존재, 국제적 사례 등을 참조한 접근 필요.
 - 국내적 관점: 자국법 개정(*PE문제 개정 필요)
 - 국제적 공조 필요(*BEPS의 국가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공시: EC, 2016.4. 채택, 연간 매출7.5억유로 이상인 회사 대상, Safeguard clause에 의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상업적 민감성 관련 자세한 정보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영국 법인세 인하).
-

5. 요약 및 결론

2) 유럽의 구글세 관련 기타 쟁점

(1) Data storage and privacy laws:

- (2016. 7. 12.) EU-U.S. Privacy Shield 채택, 유럽사법재판소는 EU-US사이에 맺어진 정보공유협정(2000 Decision on EU-US Safe Harbour)가 무효라고 판결(*구글 및 페이스북 등 미국 온라인 기업의 유럽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 EU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중, 유럽위 자국정보 통제력 강화)
-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가)자원 =>정보주권(data governance) 문제를 개인 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등의 의제를 통해 지키려는 노력 (* 경제적 문제는 정치적 의제(여론, 정당성 등)로 해결)
- 국내 개인, 공공정보(데이터) 보호 논의 필요.
Ex) 2009년 '와이스파이(WiSpy)' 사건, 국내 지도정보 반출 불허

(2) National security : 중국, 러시아 등 자국 플랫폼을 지키기 위한 수단(* 자국 검색엔진의 보유 유무가 그 나라의 온라인광고, 콘텐츠 시장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발표)

- 문화제국주의 (Cultural Imperialism): 프랑스 자끄 시락 대통령 주장, 프랑스와 독일 합작 유럽형 검색엔진 콰에로(Quearo) 프로젝트(240만달러(약 2,900억원) 투자), 콰에로 웹사이트 (<http://www.quaero.com>) 2013년 말 공식 폐쇄. 독일 독자적 검색엔진 테지우스(Theseus) 프로젝트 시도, 실패.

Thank You



하윤금(KOCCA) 전문위원